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292 호 2021. 5. 27.(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15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16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17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사항 고시] .....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1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21호[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 ..... 5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94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1-10호[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2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li> <li>☞ 북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1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5. 21.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창평동 산37-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당초 : 221m<sup>2</sup>
    - 변경 : 269m<sup>2</sup>
  - 나. 기 간
    - 2020. 10. 12. ~ 2021. 6. 30.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국가\*\*공단
  - 나. 주 소 : 부\*\*역시 \*구 층\*대로\*\*길 46 한진\*\*빌딩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16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대안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예\*록

나. 주소: 울산\*\*시 \*구 대송\*\* 39 3\* 30\*호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점용(공사용 차량 및 주택 진출입로)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안동 44-8번지 일원

나. 면적

- 일시: 5.6㎡

- 계속: 1.6㎡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2021. 5. 25. ~ 2021. 10. 25.

계속: 2021. 10. 26. ~ 2025.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17호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기간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당초	변경		
제2021 -5호	(주)경동 도시가스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370번지 일원	29.64	당초  '17.01.01. ~ '21.12.31.	변경  '22.01.01. ~ '26.12.31.	도시가스 관로 매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19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진장15길 12-6	진장명촌지구 39B 3L	2021. 5. 27.	건축물 멸실
동해안로 903	당사동 423	2021. 5. 27.	건축물 멸실
동해안로 1650	산하동 956	2021. 5. 27.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4)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5.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21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 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염람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명 : 염포동 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2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도로

등		급		연 장(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1	98	10	342	
소로	1	102	10	420	
소로	1	103	10	87	
소로	3	220	6	154	
소로	3	273	6	87	

## 나. 소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조성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정	108	소공원	북구 염포동 42일원	2,289.0	
기정	7	사회복지시설	북구 염포동 44-4일원	969.0	
기정	40	공공공지	북구 염포동 20일원	2,460.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이승훈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 5. 사업기간 :

당초 : 2018. 6. 28. ~ 2021. 04. 30.

**변경 : 2018. 6. 28. ~ 2021. 08. 31.**

##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변경**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염포동	20-2	대	127.0	12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	염포동	20-3	대	109.0	10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3	염포동	20-4	대	1.0	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4	염포동	23	대	187.0	18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5	염포동	39	전	87.0	8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6	염포동	40	대	201.0	20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7	염포동	41	전	236.0	236.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8	염포동	42	전	156.0	156.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9	염포동	42-1	전	282.0	28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0	염포동	43	전	19.0	1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1	염포동	43-1	전	144.0	144.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2	염포동	43-4	전	17.0	1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3	염포동	43-7	전	239.0	23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4	염포동	43-8	전	2.0	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5	염포동	43-2	전	33.0	33.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6	염포동	44-3	전	9.0	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7	염포동	44-6	전	62.0	6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8	염포동	44-4	전	8.0	8.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9	염포동	47-4	전	309.0	30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0	염포동	47-5	전	41.0	4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1	염포동	48-6	전	522.0	52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2	염포동	48-7	전	32.0	3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3	염포동	48-8	전	4.0	4.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4	염포동	48-14	전	363.0	363.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5	염포동	961-20	천	17.0	1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6	염포동	961-21	천	55.0	55.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7	염포동	961-46	천	35.0	35.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8	염포동	963-3	대	43.0	43.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9	염포동	963-16	대	29.0	2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30	염포동	963-17	대	1.0	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31	염포동	44-5	천	52.0	52.0	박원선	울산시 서동 523				변경 없음
32	염포동	44-7	천	1.0	1.0	박원선	울산시 서동 523				변경 없음
33	염포동	48-5	임	707.0	70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34	염포동	48-13	임	20.0	20.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35	염포동	48-10	전	12.0	1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36	염포동	961-23	천	1,540.0	1,54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37	염포동	961-47	천	54.0	5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38	양정동	517-3	대	549.0	549.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39	양정동	517-5	대	10.0	1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0	양정동	517-6	대	16.0	16.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1	양정동	519-1	대	44.0	4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2	양정동	523-25	대	212.0	21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3	양정동	523-27	대	144.0	14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4	양정동	523-28	대	872.0	87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5	양정동	556-31	임	488.0	488.0	김정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118동 106호	김상근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132동 1102호	근저당권	변경 없음
								안병례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로 91, 222동 1004호	근저당권	
								박재영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21번길 58, 502호	근저당권	
								김종임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로 91, 211동 704호	근저당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6	양정동	746-1	대	120.0	12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7	양정동	523-30	도	9.0	9.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8	양정동	556-28	임	29.0	29.0	국(산림청)					변경 없음
49	양정동	556-33	임	79.0	79.0	국(산림청)					변경 없음
50	양정동	556-29	임	109.0	109.0	국(산림청)					변경 없음
51	양정동	771-10	구	764.0	76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2	양정동	771-13	구	15.0	1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3	양정동	771-17	구	646.0	646.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4	양정동	771-12	구	10.0	10.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5	양정동	771-2	천	178.0	178.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6	양정동	771-14	천	32.0	32.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7	양정동	771-3	천	103.0	10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8	양정동	771-4	구	6.0	6.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9	양정동	771-5	구	24.0	2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0	양정동	771-15	구	1.0	1.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1	양정동	771-6	구	44.0	4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2	양정동	771-7	구	330.0	303.0	국(국토교통부)					당 초
		771-7	구	48.0	48.0	국(국토교통부)					변 경
		771-18	구	156.0	156.0	국(국토교통부)					변 경
		771-19	구	126.0	126.0	국(국토교통부)					변 경
63	양정동	771-8	구	20.0	20.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4	양정동	771-16	구	88.0	88.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5	양정동	772-1	천	3.0	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4) 변경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6	양정동	772-6	천	34.0	3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7	양정동	772-8	천	24.0	2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8	양정동	773-27	도	422.0	422.0	국(국토교통부)					당 초
		<span style="color: red;">773-28</span>	<span style="color: red;">도</span>	<span style="color: red;">422.0</span>	<span style="color: red;">422.0</span>	국(국토교통부)					<span style="color: red;">변 경</span>
69	양정동	773-28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당 초
		<span style="color: red;">773-29</span>	<span style="color: red;">도</span>	<span style="color: red;">5.0</span>	<span style="color: red;">5.0</span>	국(국토교통부)					<span style="color: red;">변 경</span>
70	양정동	773-29	도	29.0	29.0	국(국토교통부)					당 초
		<span style="color: red;">773-30</span>	<span style="color: red;">도</span>	<span style="color: red;">29.0</span>	<span style="color: red;">29.0</span>	국(국토교통부)					<span style="color: red;">변 경</span>
71	양정동	773-19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2	양정동	773-20	도	13.0	1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3	양정동	773-31	도	4.0	4.0	국(국토교통부)					당 초
		<span style="color: red;">773-32</span>	<span style="color: red;">도</span>	<span style="color: red;">4.0</span>	<span style="color: red;">4.0</span>	국(국토교통부)					<span style="color: red;">변 경</span>
74	염포동	47-6	천	39.0	39.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5	염포동	47-7	천	43.0	4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6	염포동	48-9	천	64.0	6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7	염포동	48-16	천	4.0	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8	염포동	48-11	천	14.0	1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9	염포동	48-12	천	1.0	1.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0	염포동	48-17	천	70.0	70.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1	염포동	961-18	잡	76.0	76.0	국(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82	염포동	961-44	잡	30.0	30.0	국(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83	염포동	961-29	천	104.0	10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4	염포동	961-48	천	21.0	21.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5) 변경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85	염포동	961-31	천	176.0	176.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6	염포동	961-51	천	84.0	84.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52	천	84.0	84.0	국(국토교통부)					변 경
87	염포동	961-32	천	340.0	340.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8	염포동	961-33	천	1,096.0	1,096.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9	염포동	961-34	천	466.0	466.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34	천	150.0	150.0	국(국토교통부)					변 경
		961-59	천	316.0	316.0	국(국토교통부)					변 경
90	염포동	961-36	천	445.0	44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1	염포동	961-52	천	28.0	28.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53	천	28.0	28.0	국(국토교통부)					변 경
92	염포동	961-53	천	197.0	197.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54	천	197.0	197.0	국(국토교통부)					변 경
93	염포동	961-37	천	1,034.0	1,03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4	염포동	961-38	천	13.0	1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5	염포동	961-54	천	11.0	11.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55	천	11.0	11.0	국(국토교통부)					변 경
96	염포동	961-55	천	1,042.0	1,042.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56	천	1,042.0	1,042.0	국(국토교통부)					변 경
97	염포동	961-39	천	192.0	192.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8	염포동	961-49	천	6.0	6.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9	염포동	961-40	천	140.0	140.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00	염포동	961-56	천	4.0	4.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57	천	4.0	4.0	국(국토교통부)					변 경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6)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1	염포동	961-42	천	17.0	17.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02	염포동	961-57	천	5.0	5.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58	천	5.0	5.0	국(국토교통부)					변 경
103	염포동	961-43	구	21.0	21.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51	구	21.0	21.0	국(국토교통부)					변 경
104	염포동	963-2	잡	1.0	1.0	국(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05	염포동	963-15	잡	25.0	25.0	국(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06	염포동	963-18	잡	2.0	2.0	국(기획재정부)					당 초
		963-19	잡	2.0	2.0	국(기획재정부)					변 경
107	염포동	963-11	잡	174.0	174.0	국(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08	염포동	963-12	잡	22.0	22.0	국(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09	염포동	963-21	잡	1.0	1.0	국(기획재정부)					당 초
		963-18	잡	1.0	1.0	국(기획재정부)					변 경
110	염포동	963-14	잡	342.0	342.0	국(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11	염포동	964-1	도	21.0	21.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2	염포동	964-3	도	32.0	32.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3	염포동	965-1	도	75.0	7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4	염포동	965-3	도	66.0	66.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5	염포동	965-5	도	4.0	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6	염포동	965-6	도	21.0	21.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당초) 합 계				17,806.0	17,806.0						당 초
(변경) 합 계				17,806.0	17,806.0						변 경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94호

##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인증심의)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 비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아동 비차별의 구체적 요소 명시(안 제4조제1호)
- 나.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명시(안 제4조제2호)

### 3.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16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yun5925@korea.kr](mailto:yun5925@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가족정책과
- 3) 팩 스 : 052-241-7679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를 “아동 최선의 이익을”로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장애, 출생신분,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9조 중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를 “참여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p> <p>1. <u>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u></p> <p>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u>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u>하여야 한다.</p> <p>3 ~ 5. (생략)</p> <p>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u>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u></p>	<p>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 -----.</p> <p>1. <u>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장애, 출생신분,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u></p> <p>2. ----- ----- <u>아동 최선의 이익을</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 ----- ----- ----- <u>참여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u></p>

## 근거법규

###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11.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 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1-10호

###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정외경,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백현조 의원(8명)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1. 제안이유

-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협력체계 구축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개발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안 제5조)

마.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 복구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6
----------	-----

제출연월일 : 2021. 5. 24.  
발 의 자 : 정외경 · 임채오 · 이정민 ·  
이진복 · 이주언 · 정치락 ·  
임수필 · 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 1. 제안이유

-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 협력체계 구축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 · 개발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 프로그램 운영
  -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 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안 제5조)
- 마.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 다. 입법예고 : 2021. 5. 27. ~ 6. 1.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협력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개발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의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